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 신설
및 조사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4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8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기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 5.

(3) 회 부 일 : 2026. 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원의 시설 출입·관계자 면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이하 “인권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인권실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

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3. 장애인 인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조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 및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이용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장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출입하려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9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생략) 2. ~ 7. (생략) ④ (생략)	<u>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u> <u>⑥ 인권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1.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u> <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45.0%, 652건)였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12.7%, 184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7.4%, 107건), 상업시설·기타(5.7%, 82건) 순으로 나타남(참고자료 1: 연도별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현황).¹⁾

이처럼 장애인거주시설은 학대 발생 비율이 높은 주요 공간 중 하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나로, 최근까지도 울산 태연재활원 거주장애인 학대사건²⁾, 인천 색동원 사건³⁾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일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1,524개소가 운영 중임.⁴⁾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인지·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⁵⁾

- 동 조사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 세부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내 내역사업 중 ‘인권실태조사’에 편성된 예산⁶⁾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표본조사 후, 결과 보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조사 결과는 2024년까지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거주시설에 한정하여 공개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대국민 공개를 실시하고 있음.

2) 백민. (2025. 4. 21.).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복지부·울산시 자립지원 정책·예산 적극 지원해야”.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80>)

3) 김형민. (2026. 1. 30.). “장애인시설 상습 성폭행 ‘색동원 사건’ 진상 파헤친다”.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60130/133269756/1>)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26,000명이 거주 중임.

5)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음.

6) 2025년 예산 기준 1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개요 >

○ (조사연혁)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

- * 영화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계기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추진('11.10월)
- * 「인강원」 장애인 상습 폭행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발표('14.10월)
- *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관련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107개소 인권실태조사 추진 ('25.3월)

○ (조사내용) 시설 일반현황, 인권 예방활동 운영현황(인권교육,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인권침해사례 면담조사 등

○ (조사주기 및 대상) 매년 중점사항을 선정하여 대상시설 발굴

- *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 인권취약시설, 인권침해 의심 시설,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 등

○ (관련예산) 연간 100백만원 이내

○ (조사방법) 민간 위탁 또는 복지부·지자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현장방문 조사(이용자 및 종사자 인터뷰)

○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여부) (~'24) 대국민 비공개 → ('25) 대국민 공개

<기준>

- 복지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소관업무 및 인권실태 지도·감독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인권실태 조사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거주시설에만 환류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자료에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비공개로 관리(대국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2025년>

-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한 '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포함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발표('25.11.27.)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예산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조사의 지속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조사 결과 공개 여부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현행법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원 자격 및 교육,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와 시설 출입·면담 등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은폐·축소 우려가 제기되어 온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① 조사 결과 공표 관련, 구체적인 개별 사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사항, 가해자 또는 시설 명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장애인과 가족의 사생활 침해 또는 특정 시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표 방식, 공개 범위 및 익명화 수준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2025년도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5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107개소 대상)의 경우는 시설 유형·규모·지역 분포,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인권교육 및 예방활동 실적, 점검 결과 등을 집계·통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개별 시설이나 특정 사건이 식별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공표한 바 있음(참고자료 2: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

② 조사 대상 범위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와 같이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장애인 전반에 대한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유사 실태조사 추진 방식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과 인력의 추가 확보, 조사 주기 조정 등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함께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3: 유사 실태조사 관련 현황).

□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조사 방법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권한상 한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명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① 조사 방법 관련, 개정안은 인권실태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시설 출입, 관계자 면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장소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설 운영의 자율성,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및 의사표현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까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관계자에 대한 면담은 개인의 진술을 전제로 하는 조사 방식으로, 사생활의 비밀 및 인격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② 과태료 부과 관련,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 시설 출입 제한, 관계자 면담 거부 등 침해 정도와 성격이 상이한 행위를 모두 동일한 ‘비협조’로 포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 유형 간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구체적으로 시설 출입이나 관계자 면담은 시설 운영의 자율성 및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사 방식으로,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자료 제출 요구는 시설 운영자가 관리·보관하는 객관적 자료의 제공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함.

특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⁷⁾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침해 정도와 성격이 다른 비협조 행위를 동일

7)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기준으로 과태료 제재와 일률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와 같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연계하고,

시설 출입이나 관계자 면담과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수반되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두고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행위를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지 않고,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불이행, 조사·검사·질문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등 조사 방식별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출입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 및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 재가(在家)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주소지·현재지 또는 거주시설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⑨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자립조사와 자립육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현재지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775호)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결과 공개 등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사대상, 조사원 자격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불합리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조사 주기(3년 단위) 및 조사 결과 공표는 동의
- (조사 대상)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장애아동, 아동, 노인 등 실태조사 대상이 계층(사람) 중심이며, 특정시설 대상의 실태조사 입법례 없음.
- (조사원 자격 기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원 자격 기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장애인 인권 전문가)에 공감하지만,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로 한정할 경우 대상자 불명확 등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
- (과태료 부과 기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과도한 규제로 현장 수용성 저하 우려 및 사회복지 분야 유사 입법례 없음.

나. 기획예산처

□ 현재 법정 실태조사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정책 집단별로 실시
중으로, 특정 시설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 (입법례)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아동복지지원 실태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등

- 또한, 보건복지부는 매년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수행 중으로
별도 규정 실익은 낮음.

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시·군·구에서는 연 2회 정기적인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
으므로, 개정안은 시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일 수 있음.

-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불안 유발 우려

- 인권실태조사원 선발 기준의 모호성, 전문성, 중립성 미흡

- 인권실태조사 이후 개선 및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체계의 부재

- 인권실태조사 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로만 한정할 경우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 가능성 우려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연도별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현황>

(단위: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008	100	1,124	100	1,186	100	1,418	100	1,449	100
피해장애인거주지		394	39.1	462	41.1	486	41.0	624	44.0	652	45.0
학대행위자 거주지		93	9.2	107	9.5	93	7.8	107	7.5	107	7.4
기타거주지		9	0.9	23	2.0	13	1.1	15	1.1	28	1.9
직장		99	9.8	58	5.2	60	5.1	58	4.1	70	4.8
교육기관		30	3.0	25	2.2	66	5.6	69	4.9	48	3.3
일반 의료기관		4	0.4	6	0.5	5	0.4	7	0.5	13	0.9
정신 의료기관		9	0.9	4	0.4	6	0.5	7	0.5	12	0.8
장애인복지시설	소계	176	17.5	221	19.7	245	20.7	226	15.9	245	16.9
	거주시설	150	14.9	143	12.7	198	16.7	187	13.2	184	12.7
	지역사회 재활시설	19	1.9	16	1.4	39	3.3	33	2.3	46	3.2
	직업재활 시설	7	0.7	62	5.5	8	0.7	6	0.4	8	0.6
그 외 보호시설 (쉼터)		1	0.1	2	0.2	3	0.3	1	0.1	3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0	2.0	5	0.4	29	2.4	29	2.0	24	1.7
정신요양시설		2	0.2	1	0.1	1	0.1	2	0.1	3	0.2
정신재활시설		0	0	0	0	2	0.2	3	0.2	0	0
아동관련시설		1	0.1	11	1.0	2	0.2	13	0.9	7	0.5
노인관련시설		4	0.4	5	0.4	0	0	8	0.6	6	0.4
기타 복지관련시설		2	0.2	8	0.7	6	0.5	14	1.0	8	0.6
종교시설		11	1.1	3	0.3	5	0.4	8	0.6	5	0.3
미신고시설		22	2.2	28	2.5	0	0	20	1.4	1	0.1
온라인		5	0.5	15	1.3	25	2.1	41	2.9	41	2.8
상업시설		61	6.1	56	5.0	56	4.7	78	5.3	82	5.7
기타		56	5.6	83	7.4	76	6.4	87	6.1	82	5.7
파악안됨		9	0.9	1	0.1	7	0.6	4	0.3	12	0.8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

□ 거주시설 현황 (전체 107개소)

- (시설유형)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5개소(51.4%)로 가장 많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1개소(47.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0.9%)
- (시설소재) 경기 25개소(23.4%)로 가장 많으며, 강원·경북 각각 10개소(9.3%), 서울·경남 각각 9개소(8.4%) 순이며, 세종·제주는 없음
- (시설규모) 50인~100인 미만 시설 85개소(79.4%)로 가장 많으며, 100인 이상 시설 22개소(20.6%)
 - * 설치시기 : 1980년 이전 설치 25개소(23.4%), 1980년~1999년 62개소(57.9%), 2000년 이후 설치 20개소(18.7%) 순서임
 - * 시설소재지 : 대도시 33개소(30.8%), 중소도시 58개소(54.2%), 군지역 16개소(15.0%)
- (입소 장애인 생활공간) 다인실(3인실 이상) 있는 시설 103개소(96.3%), 다인실 없는 시설 4개소(3.7%)
 - * 생활공간 규모 : 1인실 617개(23.1%), 2인실 742개(27.7%), 3인실 508개(19.0%), 4인실 386개(14.4%), 5인실 이상 422개(15.8%)
- (CCTV 설치규모) 시설 대부분(101개소)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당 10대~20대 34개소(31.8%)로 가장 많으며, 40대 이상 설치한 9개소(8.4%) 있었음
 - * CCTV 설치장소 : 시설외부 및 출입구 등 1,166개(56.5%)이 가장 많으며, 복도 434개(21.0%), 거실 295개(14.3%), 침실 101개(4.9%) 등 순서임
 - * CCTV 저장기간 : 1개월~2개월 48개소(54.5%)로 가장 많으며, 1개월 미만 21개소(23.9%), 2개월 이상 19개소(21.6%) 등 순서임
- (행정처분 이력) 거주시설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80개소(74.8%)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27개소(25.2%)
 - * 행정처분 규모(27개소) : 1건 16개소, 2건 8개소, 3건 2개소, 4건 1개소
 - * 행정처분 시기(42건) : 2015년 이전 처분 1건, 2016~2020년 처분 11건, 2021~2025년 처분 30건
 - * 행정처분 종류(42건) 개선명령 37건, 시설장교체 1건, 시설폐쇄 3건, 주의 1건

□ 입소 장애인 현황 (전체 7,070명)

- (성별) 남성 4,183명(59.2%), 여성 2,887명(40.8%)
- (연령대) 평균 연령은 44.1세이며, 40대 1,963명(27.8%), 50대 1,643명(23.2%), 30대 1,416명(20.0%), 60대 이상 964명(13.6)
- (장애유형) 지적장애 5,508명(77.9%)이 가장 많으며, 뇌병변장애 800명(11.3%), 지체장애 373명(5.3%), 자폐성장애 129명(1.8%) 등 순서임

-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6,826명(96.5%), 심하지 않은 장애인 244명(3.5%)
- (입소기간) 평균 24.3년이며, 20년~30년 2,006명(28.4%)으로 가장 많으며, 1년 미만 68명(1.0%) 및 50년 이상 72명(1.0%) 있었음
- (연고여부) 입소 장애인 연고가 있는 경우 4,617명(65.3%)이며, 연고가 없는 경우 2,453명(34.7%)
- (수급여부) 입소 장애인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6,528명(92.3%)이며, 비수급권자 542명(7.7%) 구성임
- (의사소통) 입소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3,447명(48.9%)이며, 보통인 경우 2,164명(30.7%), 원활한 경우 1,444명(20.4%) 순서임
- (약물복용) 입소 장애인의 약물 상시 복용하는 경우 5,785명(82.0%)으로 대부분이며, 미복용하는 경우 1,266명(18.0%) 있었음

□ 종사자 현황 (전체 5,143명)

- (성별) 종사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 3,122명(60.7%)이며, 남성은 2,021명(39.3%)으로 구성
- (직종) 생활지도원 3,699명(71.9%), 조리원 309명(6.0%), 치료사 168명(3.3%), 간호(조무)사 125명(2.4%) 등 순으로 구성
- (연령) 종사자 평균 연령은 45.3세이며, 50대 1,805명(35.1%) 및 40대 1,632명(31.7%) 순으로 많으며, 60대 이상 220명(4.3%)도 있음
- (근무기간) 종사자 평균 근무기간은 8.5년이며, 1년~5년 1,722명(33.5%) 및 5년~10년 1,037명(20.2%) 순으로 많으며, 1년 미만 430명(8.4%) 있음

□ 거주시설 학대 예방 활동 현황 (전체 107개소)

-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횟수) 2022~2024년(3년간) 평균 3.6회(6시간) 실시
 - * (기준) 연1회(4시간 이상) → (실적) 연2회 이상 58%, 연3회 이상 35.5%, 연1회 5.6%, 미실시 0.9%
-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실적) 2022~2024년(3년간) 교육 이수자 24,931명(92.4%), 교육 미이수자 2,060명(7.6%)
 - 교육이수 : 2022년 8,585명, 2023년 8,220명, 2024년 8,126명
 - 교육미이수 : 2022년 575명, 2023년 785명, 2024년 700명
 - * 교육 미이수 사유 : 병원 입원, 퇴소, 사망, 원가정 복귀, 근로, 등교, 외박 또는 외출, 중증장애, 자가격리(독감) 등
- (종사자 인권교육 횟수) 2022~2024년(3년간) 평균 4.3회(13.2시간) 실시
 - * (기준) 연2회(8시간 이상) → (실적) 연1회 25%, 연2회 32.9%, 연3회 22.6%, 연4회 이상 42.0%

- (시설장 및 사무국장 집합교육) 2022~2024년(3년간) 평균 시설장 93.8% 이수, 사무국장 91.6% 이수
 - 시설장 : 2022년 97개소(90.7%), 2023년 100개소(93.5%), 2024년 104개소(97.2%)
 - 사무국장 : 2022년 93개소(86.9%), 2023년 97개소(90.7%), 2024년 104개소(97.2%)
- (인권지킴이단 구성규모) 평균 6.3명이며, 5인~7인 91개소(85.1%)로 가장 많고, 8인~11인 16개소(14.9%) 구성됨
 - * (기준) 거주시설 내부 및 외부단원 5~11인 구성이며, 대부분 외부단원 50% 이상 106개소(99.1%), 외부단원 50% 미만 1개소(0.9%)
- (인권지킴이단 구성유형) 시설 입소 장애인 23.1%, 지역주민 13.2%, 시설 보호자 12.5% 시설 종사자 11.0%, 시설 담당 공무원 4.8% 등으로 구성
- (인권지킴이단 운영) 정기회의는 2022~2024(3년간) 평균 3.9회 운영, 임시회의는 3년간 평균 0.13회 운영
 - * (정기회의 운영기준) 연4회(분기별 1회) → (운영실적) 연도별 평균은 2022년 3.7회, 2023년 3.9회, 2024년 4.0회
 - * (회의보고) 정기회의는 보고횟수 충족 98.1%, 미충족 1.9%이며, 임시회의의 경우 보고횟수 충족 88.2%, 미보고 5.9% 수준임
- (인권상황 점검) 2022~2024년(3년간) 평균 13.6회 실시
 - * (기준) 연12회(월1회) → (실적) 2022년 11.9회, 2023년 13.7회, 2024년 14.4회
- (인권상황 점검보고) 2022~2024년(3년간) 인권상황 점검 전체 4,279회 대비 점검보고 2,615회로 보고율 61.1%임
 - * (추이) 2022년 61.7%, 2023년 58.4%, 2024년 63.2%
-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2022~2024년(3년간) 신고 35개소
 - * (신고 추이) 2022년 13개소, 2023년 7개소, 2024년 15개소
 - * (신고기관) 지역권익옹호기관 25개소, 지자체 14개소, 수사기관 9개소, 국가인권위 2개소 순으로 나타남(중복포함)

□ 거주시설 인권상황 점검현황(총 1,354명, 입소 장애인 705명 및 종사자 649명)

- (총괄) 대부분 긍정적 응답이나, 일부 점검항목에 대해 부정적 응답
 - 입소 장애인 중 신체적 학대, 노동착취 및 성적 수치심 등에 일부 학대 경험 응답
 - * (입소 장애인 부정적 응답) 지역사회 생활지원(69명), 전화사용(43명), 금전 사용 및 관리(41명)

점검항목	입소 장애인(명)				종사자(명)			
	예	아니 오	모르 겠다	무응 답	예	아니 오	모르 겠다	무응 답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	595	9	38	63	647	2	0	0
개인수납공간	616	9	20	60	618	1	30	0
외출	567	27	45	66	633	0	16	0
전화사용	511	43	59	92	617	2	30	0
음식섭취	610	15	18	62	630	1	18	0
의복 및 머리모양	586	25	23	71	630	0	19	0
지역사회 생활지원	421	69	102	113	603	2	44	0
금전 사용 및 관리	501	41	80	83	582	5	62	0
적절한 치료	607	5	23	70	638	1	10	0
불만 및 의견제시	533	14	55	103	623	2	24	0
노동착취	13	566	32	91	6	634	9	0
신체적 학대	15	602	12	76	9	636	4	0
성적 수치심 및 성적학대	6	591	17	91	5	636	8	0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3: 유사 실태조사 관련 현황〉

구분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관련근거	제31조 (실태조사)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제5조 (노인실태조사)
조사대상	장애인 (등록장애인)	장애아동 및 그 가족	아동 (18세 미만)	노인 (65세 이상)
조사주기	3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조사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표본조사(외부의뢰), 지자체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외부의뢰)	보건복지부장관 (외부의뢰)
조사내용	장애인 일반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복지시설 이용 등 복지욕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지원상황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장애아동 복지지원현황,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등	아동의 가구환경,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 아동안전, <u>아동학대</u> ,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 등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경제상태 및 주택,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 노인 소득·재산 등,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욕구 등
'26년 소요예산	1,600백만원	50백만원	618백만원	1,233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